

의안번호	2201625
의 퇴 인	추경호의원
회 답 일	2024.09.11
추계번호	24C189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¹⁾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는 인구위기대응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인구위기대응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인구위기대응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인구위기대응정책 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2	안 제8조 (인구위기대응정책 기본계획)	○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은 인구위기대응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인구위기대응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함(제1항)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의무규정
3	안 제9조 (연도별 시행계획)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안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안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안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안(이하 “시행계획안”이라 한다)이 확정된 경우 이를 시행하여야 함(제1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구위기대응정책에 반영하여야 함.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구조 변화 및 대응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하여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제5항)	의무규정

1) 전부개정안은 법제명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변경하고자 함

4	안 제11조 (인구위기대응위원회)	○ 인구위기대응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구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둠(제1항)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제3항) － 위원장은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2호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인구위기대응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기타 다양한 의견 반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됨(제4항)	의무규정
5	안 제13조 (인구위기대응정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은 매년 인구위기대응정책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이하 “평가등”이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함(제1항) ○ 제1항에 따른 평가등의 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의무규정
6	안 제14조 (전문 조사·연구기관의 지정 등)	○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은 인구위기대응정책의 수립·조정, 평가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그 밖에 전문인력 및 조사·연구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함(제1항)	의무규정
		○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전문기관에 출연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7	안 제16조 (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제1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8	안 제17조 (안정적인 결혼·출산을 위한 주거 지원 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안정적인 결혼과 출산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 안정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의무규정

9	안 제18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의무규정
10	안 제19조 (고용과 소득보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함(제1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11	안 제20조 (건강증진과 의료 제공)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연령별 건강상의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제1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을 위한 의료·요양제도 등을 확립·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12	안 제21조 (생활환경과 안전 보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설비를 갖춘 주거와 이용시설을 마련하고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노후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재해와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의무규정
13	안 제22조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함(제1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14	안 제23조 (평생교육과 정보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세대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교육시설의 설치·인력의 양성 및 프로그램의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제1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세대간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장비 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15	안 제24조 (노후설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설계하기 위하여 재무, 건강, 여가, 사회참여 등 각 분야에서 적절한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의무규정

16	안 제25조 (취약계층노인 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노인·장애노인 등 취약계층의 노인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고 도시·농어촌지역간 격차 등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함	의무규정
17	안 제26조 (가족관계와 세대간 이해증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을 장려함으로써 노인이 가정과 사회에서 공경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대간 교류의 활성화와 세대간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가 형성되도록 필요한 사회환경을 조성하여야 함	의무규정
18	안 제27조 (경제와 산업 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경제·산업구조 및 노동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의무규정
19	안 제28조 (고령친화적 산업의 육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수요의 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야 함(제1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에게 필요한 용구와 용품 등의 연구개발·생산 및 보급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20	안 제29조 (인구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지원)	○ 국가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외 거주하는 사람의 국내 유입에 관한 적절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의 수립·시행 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함(제2항)	의무규정
21	안 제30조 (인구교육 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저출생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함(제1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가족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22	안 제31조 (전문인력의 양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연구소·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23	안 제32조 (민간의 참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위기대응정책에 관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함	의무규정
24	안 제33조 (인구의 날)	○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정함(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25	안 제34조 (국제교류의 활성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참여하고,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함	의무규정
26	안 제35조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인구위기 대응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위기대응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8조 (인구위기대응정책 기본계획)	○ 기시행 사업으로 추가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
3	안 제9조 (연도별 시행계획)	
4	안 제11조 (인구위기대응위원회)	

5	안 제13조 (인구위기대응정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 기시행 사업으로 추가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
6	안 제14조 (전문 조사·연구기관의 지정 등)	
7	안 제16조 (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8	안 제17조 (안정적인 결혼·출산을 위한 주거 지원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9	안 제18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 기시행 사업으로 추가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
10	안 제19조 (고용과 소득보장)	
11	안 제20조 (건강증진과 의료제공)	
12	안 제21조 (생활환경과 안전보장)	
13	안 제22조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14	안 제23조 (평생교육과 정보화)	
15	안 제24조 (노후설계)	
16	안 제25조 (취약계층노인 등)	
17	안 제26조 (가족관계와 세대간 이해증진)	
18	안 제27조 (경제와 산업 등)	
19	안 제28조 (고령친화적 산업의 육성)	
20	안 제29조 (인구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지원)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1	안 제30조 (인구교육 등)	○ 기시행 사업으로 추가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
22	안 제31조 (전문인력의 양성)	
23	안 제32조 (민간의 참여)	
24	안 제33조 (인구의 날)	
25	안 제34조 (국제교류의 활성화)	
26	안 제35조 (지원)	

2. 상세 사유

- 동 전부개정안은 현재 저출생과 고령화에 한정되어 있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대상에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인구의 총량 및 구성이 변화하는 것)를 포함하고 법제명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수정하고자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4조)
 - 전부개정안에 따라 국가가 인구위기대응정책을 수립·시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동 조문은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선언적 규정으로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곤란하여 추계 대상에서 제외
- (안 제8조~제14조) 전부개정안에 따른 인구위기대응정책 기본계획·시행계획, 인구위기대응위원회, 인구위기대응정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및 전문 조사 기관 지정 등은 현행법의 조문을 갈음하여 동 제정안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사업이 수행되고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안 제8조·제9조) 보건복지부는 5년 주기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하는 시행계획 및 성과평가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있으며, 기존 사업비 내에서 인구위기대응정책에 대한 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표 1] 최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관련 용역비 현황

(단위: 만원)

연도	연구용역명	소요예산
2022	2022년도 저출산·고령화사회 시행계획 및 핵심성과지표 개발 연구	2,400
	2021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및 심층평가 모델개발 연구	4,091
2023	2022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연구	3,637
	2022년도 지자체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성과평가 연구	5,455
	2023년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수립 및 핵심성과지표 활용방안 연구	4,546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 (안 제11조) 전부개정안에 따른 인구위기대응위원회는 현행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위원 정수가 25인으로 동일하며, 심의 내용이 유사하여 개최 횟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함
- (안 제13조·제14조) 인구위기대응정책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와 전문 조사·연구기관의 지정은 현행 사업비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보건복지부는 2023년부터 현재까지 총 15개의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024년 4월부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위탁운영(8억 9,364억원)하고 있음

[표 2] 저출산·고령사회 연구용역 발주 내역(2023~2024년)

(단위: 만원)

연도	연구용역명	소요예산
2023	인구 구조 변화 대응 및 지역 상생을 위한 인구정책 방안	6,364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 교육, 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	2,000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일하는 방식 변화 방안 연구	4,000
	초고령 사회 대응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및 기대효과	4,546
	2023년도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 수립 및 핵심성과지표 활용방안 연구	4,546
	저출산 정책평가 및 핵심과제 선정 연구	8,000
	2022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연구	3,637
	저출산 현안 분석 및 정책 발굴을 위한 심층 연구	9,091
	인구정책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한 로드맵 수립 연구	4,000
	아동양육 지원정책 체계화 및 개편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연구	4,081
	2022년도 지자체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 성과평가 연구	5,455
	인구정책 성과평가체계 개편방안 연구	9,091
	초고령사회 연령통합적 기반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10,000
2024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연구	4,000
	저출산 사업 효율화를 위한 사업 재구조화 방안연구	3,000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 (안 제16조·제18조~제28조·제30조) 전부개정안의 “제4장 인구위기 대응정책의 기본방향”의 각 조문들은 현행법의 조문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동 조문들은 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경제적 부담의 경감, 고용과 소득보장 등 각 분야에 대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한편, 안 제18조에서는 ‘첫만남이용권’ 지급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고 전부개정안 부칙에서 아동수당법에 첫만남이용권 지급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것을 명시함

□ 안정적인 결혼·출산을 위한 주거 지원 등(안 제17조)

- 전부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인 결혼과 출산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수행하도록 하였으나, 국회예산정책처(2023)²⁾에 따르면 ‘출산가구 주거안정’ 분야(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에 국가 재정 약 9조원(2024년 예산안 기준)이 배정되는 등 기시행 사업이 수행되고 있으므로, 동 조문은 기존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인구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지원(안 제29조)

- 국가가 국외 거주하는 사람의 국내 유입에 관한 적정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 사업 수행 여부 및 규모 등을 가정하기 어려우므로 추계가 곤란함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에 따르면, 현재 인구 이동과 관련한 국가 사업이나 향후 사업 계획은 부재함

□ (안 제31조~제35조) 전부개정안의 “제5장 보칙”의 각 조문들은 현행법의 조문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기시행 사업들이 수행되고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해당 조문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국제교류의 활성화 및 국가의 지원 등의 정책을 기존 저출산·고령화 대상에서 인구위기 전반에 대한 대응으로 확대할 시 사업의 확대가 필요할 수 있으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에 따르면 현시점에 예상되는 사업이나 추가재정소요는 없음

2) 국회예산정책처, 「중·장기 재정현안 분석 인구위기 대응전략(1.요약)」, 2023.11.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기시행 사업으로 추가 비용을 수반하지 않는 조문을 제외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4조)’, ‘안정적인 결혼·출산을 위한 주거지원 등(안 제17조)’, ‘인구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지원(안 제29조)’은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임슬기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슬기	02-6788-4740	sg.lim@assembly.go.kr